

의안번호	제 72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5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723

제출연월일 : 2021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」 권고(2020. 8.)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반영,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·투명성·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변경(안 제5조)
 - 당연직 위원(14명 → 6명)
 - (현행) 행정부지사, 본청의 실·국·본부장 및 정책기획관
 - (변경) 행정부지사, 기획관리실장, 경제통상국장, 신성장산업국장, 바이오산업국장, 정책기획관
 - 위촉직 위원(6명 → 14명)
 - (현행) 위촉직 위원수가 3분의 1이상(지방행정에 관한 외부전문가)
 - (변경) 위촉직 위원수가 과반수(지방행정에 관한 외부전문가+도의원 1명)
- 연구결과의 자체평가 절차 명확화(안 제13조)
 - (현행)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평가결과 위원회에 제출
 - (변경) 과제담당관은 용역종료 1개월 이내 자체평가결과 총괄부서에 제출
- 성과점검 절차 명확화(안 제15조)
 - (현행) 도지사는 성과점검 후 부서평가 반영
 - (변경) 총괄부서는 성과점검 후 점검결과 위원회 제출
- 기타(안 제2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4조, 제18조 등)
 - 부서 정의 신설, 조직기구 변경사항 반영, 과제선정 유사·중복 검증 명확화
 - 공개 대상 추가, 위원회 존속기한(5년) 규정 신설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총괄부서”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
4. “주관부서”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충청북도 본청의 실·국·본부장 및 정책기획관”을 “기획관리실장, 경제통상국장, 신성장산업국장, 바이오산업국장 및 정책기획관”으로, “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, “임명 또는 위촉한다.”를 “위촉한다.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외부전문가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”을 “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수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총괄부서의 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의원 1명
2. 지방행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

제7조의2를 삭제한다.

제9조제2항 단서 중 “직속기관·사업소”를 “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·합의제 행정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,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제9조제3항제2호 중 “예비평가”를 “자체평가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”을 “과제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용역 실명 대상공무원”을 “과제담당관”으로, “중복”을 “유사·중복”으로, “유사한”을 “유사·중복되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정책연구용역의 유사·중복 여부

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“용역 실명 대상공무원”을 각각 “과제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연구결과의 자체평가) 과제담당관은 용역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전문위원과 함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자체평가하고, 그 결과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용역 실명 대상공무원”을 “과제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결과”를 “결과 및 자체평가결과”로 한다.

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도지사”를 “총괄부서”로, “연구결과”를 “연구결과, 자체평가결과”로, “점검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”를 “점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점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를 선정할 때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종합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,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다른 조례의 적용)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8조(존속기한)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규정 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총괄부서”란 충청북도 정책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</u></p> <p>4. <u>“주관부서”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.</u></p>
<p>제5조(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당연직 위원은 <u>충청북도 본청의 실·국·본부장 및 정책기획관</u>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<u>지방 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</u>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기획관리실장, 경제통상국장, 신성장산업국장, 바이오산업국장 및 정책기획관</u> ----- <u>다음</u>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----- ----- -----<u>위촉한다.</u></p> <p>1. <u>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의원 1명</u></p> <p>2. <u>지방행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<u>외부전문가인 위원이 3분의 1이상</u>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위촉직 <u>위원의 수가 과반수가</u> ----- -----.</p>
<p>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<u>업무담당 사무관</u>이 된다.</p>	<p>④ ----- ----- <u>총괄부서의 업무담당</u> -----.</p>
<p>⑤ (생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7조의2(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)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① <u>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</p>	
<p>1. <u>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·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</u></p>	
<p>2. <u>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</u></p>	
<p>3. <u>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	
<p>② <u>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</u></p>	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)</p> <p>① <u>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</u>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② <u>용역 실명 대상공무원</u>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4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<u>중복되는지</u>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, 검토 결과 <u>유사한</u> 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)</p> <p>① <u>과제담당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과제담당관</u>----- ----- ----- <u>유사</u> <u>· 중복</u> ----- -- <u>유사· 중복되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)</p> <p>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11조(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)</p> <p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정책연구용역의 유사·중복 여부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<p>제12조(연구진행상황의 점검) ① <u>용역 실명 대상공무원</u>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연구진행상황의 점검) ① <u>과제담당관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다만,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②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② <u>과제담당관</u></p>
<p><u>제13조(연구결과의 평가) ① 삭제</u></p> <p>②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평가 전문위원과 함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예비평가하고, 예비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용역결과를 종합평가하고,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를 선정할 때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.</p>	<p><u>제13조(연구결과의 자체평가) 과제담당관은 용역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전문위원과 함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자체평가하고, 그 결과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14조(연구결과 및 활용의 공개)</u>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(프리즘)에</p>	<p><u>제14조(연구결과 및 활용의 공개)</u> <u>과제담당관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내용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1. 정책연구용역 <u>결과</u> :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15조(성과점검) <u>도지사는</u> 매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, <u>연구결과</u> 및 활용상황 등을 <u>점검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----- 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.</p> <p>1. ----- <u>결과 및 자체평가결과</u> :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성과점검) ① <u>총괄부서</u>----- ----- <u>연구결과, 자체평가결과</u> -- <u>점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회는 점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를 선정할 때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종합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6조(수당 등) <u>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7조(다른 조례의 적용)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8조(존속기한)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.</u></p>
<p><u>제16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19조 (현행 제16조와 같음)</u></p>

관계법령

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
제49조(정책연구)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(이하 “연구자”라 한다)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50조(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(이하 “정책연구”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(이하 이 절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2.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3.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1조(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.

1.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 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
2.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

□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
2.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5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4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(위촉직 위원 과반수 구성)을 반영하고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「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위촉직 위원 8명 증원(6명→14명)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 수요 발생

3. 관련조문

- 제5조(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)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수당 등) ①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산출근거(위촉직 위원)
 - 2021년 : 200천원 × 8명 × 2회/년 = 3,200천원
 - 2022년 이후 : 200천원 × 8명 × 5회/년 = 8,000천원

※ 증원되는 위촉직 위원 8명이 회의참여 시 1명당 200천원(출석 100, 안전심사 100) 소요 예상

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 시행 시 '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35,200천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일반회계 100%
- ※ 정책기획관실 위원회 운영수당 활용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출	3,200	8,000	8,000	8,000	8,000	35,200
출석수당 등	3,200	8,000	8,000	8,000	8,000	35,200

6. 작성자 : 정책기획관 신성영